

# 지자체 자치법규 소비자지향성 분석의 현황과 과제

## 목 차

---

1. 서론	/ 01
2. 소비자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위상	/ 03
3. 지자체 자치법규의 소비자지향성 분석의 의미와 사례	/ 11
4. 결론	/ 26

---

## 1. 서론

-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이후 3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확대되어왔고, 그에 상응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sup>1)</sup>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 결과 주민의 지방정치와 행정에 대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됨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 확대는 주민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수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의 이용관계가 소비자 문제와 관련되는 사례가 증가추세임
  - 대표적으로 문화예술, 체육시설 서비스 등의 제공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이용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주민은 소비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조건이 관련 법령상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권익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소비자권익의 관점에서 자치법규가 소비자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1) 윤석열 정부도 국정목표6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2022.7),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p.10

-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소비자지향성 분석의 의미,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함
- 이에, 소비자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을 소비자계약과 안전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특히 소비자개념에서 지자체가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지를 분석함
- 그리고 소비자지향성 분석의 의미, 방법 및 기준을 고찰하고 실제 분석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봄
  - 분석사례는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치법규”와 소비자안전에 해당하는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함<sup>2)</sup>
  - 특히 소비자계약 분야의 경우 분석기준으로 관련 법령,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등을 살펴보고 시설사용료 반환 규정을 중심으로 세부 분석을 수행함
  - 소비자안전 분야의 경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지역 축제의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법규 개정논의를 고찰하고, 이를 사례분석에 적용하여 소비자권익 제고 방안을 모색함
-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은 자치법규의 소비자지향성 분석의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과제 해결방안을 제안함

---

2) 분석사례 선정이유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부분에서 설명함

## 2. 소비자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위상

### 2.1. 소비자계약과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일반지방행정기관으로서 헌법상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따라 국가의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공법인<sup>3)</sup>이고, 통상행정주체로서 지위를 가짐
- 헌법은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고 있어 지방행정은 지자체의 자치행정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일반지방행정기관으로 지칭하고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만을 관장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구분하고 있음<sup>4)</sup>
  - 따라서 국가 행정사무의 지방에서 집행은 지자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서 수행되며, 국가는 별도의 공법인을 설립하여 전국에 걸쳐 해당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 영조물법인, 공재단, 공사단이 여기에 속하고 이들은 국가, 지자체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며, 설립 주체가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지자체가 설립하는 경우(지방공단, 공사 등)도 있음
-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이에 관하여는 조례를 제정하여 규율할 수 있음
  - 국가사무 중 지자체의 집행기관인 단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조례로 이를 규율할 수 없음
  - 다만,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라도 법령상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규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례를 위임조례라 함<sup>5)</sup>

3) 「지방자치법」제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4)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Ⅱ」, 법문사(2021), p.59; 이광윤, 「일반행정법」, 법문사(2012), p.506

5)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p.133.

-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인 자치사무\*의 경우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규율할 수 있고, 이러한 조례를 자치조례로 위임조례와 구분하고 있음

\*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시행 여부가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지에 따라 ‘수의사무’(도서관 설치, 초등학교 이외의 각종학교 설치 등)와 ‘필요사무’(초등학교 설치·운영, 오물처리사무 등)로 구분6)

- 지자체는 국가 사무의 일부, 지역 내 필요한 사무 등 지방행정의 주체로서 행정권의 집행자이자 동시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음
  - 지자체는 주민에 대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자치권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무를 수행하는 주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 □ 소비자개념과 제 문제

- 통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또는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a person who buys goods or services for their own use)’를 의미함<sup>7)</sup>
  - 사전적 의미의 소비자개념을 ‘본래적 소비자’라 지칭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를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초점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개념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지 않고 중간재로 활용하는 생산자와 대비되어 소비자와 생산자의 구분에 유용한 개념 도구임

6) 이광윤, 앞의 책, p.566.

7) Bryan A. Garner editor in chief, 「Black's Law Dictionary」 10<sup>th</sup> edition, Thompson Reuters(2014), p.392

- 한편, 개별법률에선 당해 법률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본래적 소비자 개념을 확장하여 소비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 소비자개념으로 지칭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소비자기본법」제2조 제1호는 본래적 소비자개념에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sup>8)</sup>를 포함하여 정의
  - 이는 생산활동을 위해 물품 등을 소비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소비자개념에 포함한 것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서 입법목적에 따라 정책적 소비자개념을 사용
- 이러한 정책적 소비자개념은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또는 이용)’의 개념 확장을 통하여 포섭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 소비자의 개념 요소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란 공급적 요소와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란 사용적 요소로 구분한다면, 전자가 아닌 후자를 통한 개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종래 정책적 소비자개념은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자·공급자 측면을 간과한 상태에서 본래적 개념을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 □ 사업자 개념과 지자체

- 소비자개념에서 사업자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또는 제공자)’를 의미하는데, 통상 사인(私人)을 전제로 하지만 논리상 이에 한정되지 않음
  -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법적 인(人, legal entity)를 의미하기 때문에

8) 시행령은 다시 이를 세분하여 “제공된 물품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고,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포함하여 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논리적으로 사인만이 아니라 공법인(公法人)도 포함

- 한편, 「소비자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사업자를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포함되는지 명시적 규정은 없음
- 다만, 기본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와 소비자, 사업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는데,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규제의 주체이고 사업자가 그 대상인 경우임<sup>9)</sup>
- 소비자원 업무규정이지만 기본법 제35조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원칙적으로 피해구제처리대상에서 지자체가 제공한 물품 등을 제외하지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

○ 이에, 지자체의 경우 행정규제의 주체로서 지위를 가지는 경우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지위를 가지는 경우를 구분하여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가 규제의 주체로서 고권적·우월적 지위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우 사업자로 볼 수 없으나 물품 등의 제공자로서 지위를 가지는 경우는 사업자로서 볼 수 있음
- 지자체는 다양한 지방행정을 수행하고 특히 주민의 복리를 위한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주체로서 지위를 가질 수 있음

○ 소비자개념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면 지자체가 사업자로서 지위를 갖고 이의 이용자가 소비자로 포섭될 수 있음

- 지자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민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의 이용자는 소비자로 보아야 함

9) 예를 들어, 제8조(위해의 방지), 제9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10조(표시의 기준) 등

## 2.2. 소비자안전과 지자체

### □ 행정규제 영역과 지자체

- 지자체는 자치권을 향유하고 이에는 자치입법권이 포함되며\*, 자치 입법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

-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법률유보 사항으로 명시한 것으로 지자체 자치입법의 사항적 한계를 명시한 것인데, 광범위한 자치입법의 제약이란 비판이 있음<sup>10)</sup>

- 따라서 지자체 자치입법권만을 근거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규정할 수 없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함

- 따라서 행정규제\*의 영역에서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통해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함

\*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를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규정(제2조제1호)

- 그러나 행정규제를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행동을 유도하는 공공단체의 행위’로 넓게 정의하면, 자치법규를 통한 규제도 가능함

10)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p.137. 이에,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이 위헌이란 주장도 있으나 다수견해는 합헌설을 취하고 있다.

## □ 소비자안전에서 지자체의 지위

- 소비자안전 분야에서도 지자체는 규제자로서 지위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위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음
  - 소비자안전은 통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위해로부터 소비자가 안전한 것”을 의미
  - 따라서 지자체가 소비자안전에 관하여는 공행정의 주체로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자로 위상을 가지는 경우와 직접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위상을 가지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자체가 규제자로서 지위를 가지는 경우 행정규제를 자치법규를 통해 규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 제품의 안전기준 설정 등에 해당하는 행정규제는 법률로 정하고 자치법규로 규율하더라도 법률상 위임이 필요함
  - 다만, 광의의 행정규제로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 사업자의 행위를 유도하는 것은 자치법규로 규율 가능함
- 지자체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비자가 안전하게 해당 재화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에서 규율해야 함
  - 지자체가 재화 등의 제공자인 경우 소비자안전 강화를 위한 사항은 규제가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자치법규로 규율 가능
  - 예를 들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은 조례로 규율할 수 있음
- 지자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시

### 타 지자체의 규율 수준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재량으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안전을 자치법규로 강화하는 경우 타 지자체의 평균적인 규율 수준을 기준으로 이를 반영하는 입법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자체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지자체의 경우 자신들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2.3. 소결

- 지자체의 경우 종래 지역 소비자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주체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자치법규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기본조례를 소비자 관련 자치법규로 보았음
- 소비자정책은 통상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과 제도 등을 통하여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 종래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보호론적 관점’에서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권론적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
  - 소비자정책은 기만적이거나 오인을 일으키는 관행과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또는 소비자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음
- 「소비자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운영과 함께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할 책무를 부과함

- 시행령 제3조는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 조례에 포함될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이에,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지자체는 「소비자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소비자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자치법적 근거로서 기능하고 있음
  - 다만, 광역지자체의 경우 「소비자기본조례」를 모두 제정·시행중에 있으나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체의 약 35%만이 해당 조례를 가지고 있어, 이의 제정·시행이 필요함 \*
- \* 「소비자기본법」상 지자체에 부과한 책무는 광역·기초를 구분하지 않아, 법리상 기초 지자체가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그러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지방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 관련 자치법규도 이에 상응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지자체 자치법규의 소비자권리 제한 가능성은 높이고 이에 대한 통제기제로서 소비자관점의 분석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경우 지자체가 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이의 이용관계가 소비자계약으로서 사법관계가 되어 소비자권리 제한 여부를 분석해야 함
  - 지자체의 경우 일반지방행정기관으로서 사무적 한계가 없어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를 규율하는 광범위한 자치법규가 소비자문제와 연계될 수 있음

### 3. 지자체 자치법규의 소비자지향성 분석의 의미와 사례

#### 3.1. 자치법규의 소비자지향성 분석의 의미와 기준

##### □ 자치법규의 소비자지향성 분석의 의미

- 지자체 자치법규 중 소비자 관련된 것을 대상으로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sup>11)</sup>를 분석
  - 자치법규가 소비자권익을 보장하는 수준을 추상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기준과 해당 자치법규가 보장하는 소비자권익의 수준을 비교
- 자치법규의 소비자지향성 분석을 통해 해당 자치법규가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해당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을 제고함<sup>12)</sup>
  - 따라서 자치법규가 소비자권익에 친화적으로 제·개정 되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 지향성 분석의 목적임
- 소비자지향성 분석에서 소비자권익제한 유형은 ‘소비자의 안전 저해’, ‘소비자정보제공 제한’, ‘소비자의 선택제한’, ‘소비자의 거래제한’으로 분류

##### □ 자치법규의 소비자지향성 분석기준

- 분석대상 자치법규가 규율하는 영역에서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권익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분석

11) 소비자지향성을 의미,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Ⅱ. 2. 관련 정의

12)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Ⅲ. 평가원칙 및 유형, 1. 평가원칙

- 예를 들어,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권의 보장 수준과 분석대상 자치법규의 관련 규정의 규율 수준을 비교
  - 직접 관련 법령이 부재한 경우 소비자법령,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소비자권의 보장 수준을 기준으로 분석
- 소비자안전 분야는 일차적으로 법령상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위임이 부재한 경우 타 지자체의 해당 영역의 규율 수준을 기준으로 분석
- 법령상 위임사항의 불완전한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타 지자체의 관련 자치법규 규정을 참고함
  - 규율 대상의 중요성, 사회적 이슈화 등을 고려하여 법령상 위임이 부재한 경우 타 지자체의 자치법규 규율 수준을 분석 기준으로 함
- 자치법규에 대한 소비자지향성 분석 후 소비자권익을 제한하거나 불완전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 대상 자치법규의 소비자 친화적 개정방안을 마련하여 입법화를 추진함

### 3.2. 소비자지향성 분석 대상선정 및 절차

#### 1) 분석 대상선정 기준

- 지자체 자치법규가 소비자권익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평가하여 분석 대상 자치법규를 선정함
- 소비자권익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은 소비자권익의 침해

### ‘가능성’과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함

- 침해 가능성은 ① 거래분야, ② 안전분야, ③ 정책분야 자치법규 순서로 낮고, 위험성은 ① 다수성, ② 반복성, ③ 밀접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이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자치법규’와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자치법규’는 침해 가능성과 위험성이 높은 영역의 자치법규로 평가되어,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

○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및 「체육시설업법」을 근거로 하여 관할 지역 내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체육시설의 제공자로서 이의 이용관계는 소비자거래 분야에 해당함

- 따라서 지자체 체육시설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자치법규는 소비자거래 분야로서 소비자권의 침해 가능성 정도가 높음
- 또한, 다수 지자체가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다수성·반복성이 있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주민 등 소비자의 이용 빈도가 높아 밀접성도 있음

○ 따라서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 자치법규는 소비자권의 영향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분석이 필요함

- 지자체 체육시설의 이용관계는 i) 시설이용 신청 및 혜가, ii) 시설 이용과 사용료 납부의 두 가지 법률관계로 구분할 수 있음
- i)의 경우 사용 혜가로서 공법관계이고 ii)는 사법관계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소비자지향성 분석은 ii)를 대상으로 수행함

○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광산업 증진 등을 위해 지역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고 이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 또한, 지자체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자치법규의 경우 축제소비자의 물품거래만이 아닌 축제 이용 단계에서의 안전도 문제 되고 있음

- 이에, 지역축제 관련 자치법규는 소비자거래와 안전 분야가 교차하는 영역으로서 소비자권의 침해위험성이 높고, 여러 지자체가 지역축제를 지원하고 있어 다수성, 다양성이 있으며, 축제참가자 증가로 소비자 밀접성이 있음
- 따라서 소비자권익에 미치는 영향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어 분석대상으로 선정

## 2) 소비자지향성 분석 절차

분석대상 선정	소비자지향성 분석	개선방안 도출	개선방안 마련
• 소비자권의 제한 및 영향 수준 평가	• 분석기준 채택 및 적용을 통한 분석	• 소비자권의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지자체와 개선협의회를 통해 개정안 조율 • 입법 개정방안 마련

## 3.3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자치법규<sup>13)</sup>

### 1) 분석대상 및 기준

#### □ 분석대상

○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의 사용료 관련 규정 중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분석함

#### □ 분석기준

○ 관련 법령

13) 이하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자치법규 소비자지향성 분석은 황의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자 권익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방안 연구-사용료 반환 규정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6권 제1호(2024), pp. 225~238을 기반으로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 ※ 「체육시설업법」상 이용료 반환 규정

####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2조 제1항제4호가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 (이용료× 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횟수)] - 위약금
2. 법 제22조 제1항제4호나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횟수)] + 위약금
비고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 입회금 · 가입비 ·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용료 반환 규정

####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 3) 생략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 -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이란, 계약 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밀함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2) 사례 1: 사용료 반환 규정 불비

(a)「000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 등은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전용사용료 제외) : 전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취소일 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전용사용료 제외) 4. 전용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
(b)「000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사용 허가취소 등에 따른 사용료 반환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a)는 반환 사유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 취소’, ‘당사자의 귀책이 아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

- 따라서 운영자(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관한 사용료 반환 규정이 없다.
- (b)는 제10조 제2항에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료 반환 규정이 불비되어 있음
- 대부분의 체육시설 설치·운영 자치법규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용취소'로 반환 사유를 규정
- 그런데 사례1은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구체적 반환규정이 불비되어 있어, 소비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소비자의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
  - 「체육시설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와 함께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도 반환기준을 명시
- 따라서 사례1과 같이 사용료 반환규정이 불완전한 경우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규정 정비가 필요

### 3) 사례 2: 위약금의 불평등한 부과와 과도한 위약금

(a) 「OOO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반환한다. 이 경우 사용을 연기하는 것도 사용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1. 전용사용료 : 사용개시일 전 사용취소 신고시기에 따라 사용료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 가. 30일전 : 10분의 7
  - 나. 20일전 : 10분의 5
  - 다. 10일전 : 10분의 3
  - 라. 5일전 : 10분의 1

2. 그 밖의 사용료(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 반환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써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등 전액 반환

(b) 「OOO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7

구분	사용료 반환 기준 (제10조 관련)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
개시 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반환 불가
개시 전	전액 반환	전액 반환	5일 전 취소 : 사용료 전부 반환 4일 전 ~ 1일 전 취소 : 사용료 10분의 9 반환
비고	1. 기상 등 천재지변 또는 시설운영자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환급을 원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OOO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예보 및 경보단계로 “경보” 이상을 발령한 경우 실외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반환. 3. 강습 횟수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용한 강습횟수 금액과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례2 (a)는 사례 1과 다르게 사용료 반환사유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 연습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후 취소는 반환하지 않고 있음
- 「체육시설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용개시 후에도 소비자는 사용취소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사용기간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음
  - 그런데 사례2 (a) 조례는 사용개시 후에는 취소하는 경우 잔여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여 사실상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음

- 사례2 (a)에서 전용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 사용취소의 경우 취소 신고 시기에 따라 반환금액을 차등하여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음
  - 30일 전의 경우 사용료의 30%, 20일 전 50%, 10일 전 70%, 5일 전 9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 반면에 사례2 (a)의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만일 운영자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에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후 취소된 경우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만 반환받게 됨
- 이에, 운영자 귀책사유로 사용취소가 된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사용취소 시 부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한
  - 「체육시설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운영자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 이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의 경우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하는 것과 형평을 맞춘 것임
  - 그런데 사례2 (a)는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에 대해 불평등하게 위약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의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한
- 또한, 「체육시설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전체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사례2 (a) 조례의 경우 사용료의 30%~90%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음

- 이러한 과도한 위약금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취소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효과 (chilling effect)를 야기하고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제한
  - 또한 전용사용료의 경우 사용개시 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 규정이 없어 전용사용자의 개시 후 해제권을 제한<sup>14)</sup>
- 사례2 (b)의 경우 연습사용료 반환에서 개시 전에는 전액 반환이지만 개시 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10% 위약금 부과
- 반면, 시설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의 경우 전액반환만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한
- 또한 사례2 (b)의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의 경우 개시 전에 취소하는 경우 10%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시설운영자의 경우에는 연습사용료처럼 전액반환만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
- 특히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에서 개시 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아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

#### 4)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한 개정방안

##### 반환사유 관련 조항

- 사례1처럼 사용료 반환사유에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없는 경우 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 사용료 반환이 발생하는 경우로 운영자 귀책사유, 소비자 귀책사유 양 당사자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그리고 각 반환사유

---

14) 사용료 반환 규정이 조례에 없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없어 전용사용자는 개시 후에는 사용료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전용사용자는 취소권 행사를 하기 어렵게 된다.

마다 사용개시 전·후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은 6가지로 구분됨

구분	사용취소 시기	
	사용개시 전	사용개시 후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①	②
운영자 귀책사유	③	④
사용자 귀책사유	⑤	⑥

- 6가지 반환사유 중 ①과 ②의 경우 반환범위에 관하여 「체육시설법」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대부분의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는 ①과 ②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반환 사유로 두고, 반환범위는 사용료 전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이 불비 되어 있는 조례의 경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위약금 관련 조항

- 사례2 위약금의 불평등한 부과와 과도한 위약금의 경우 「체육시설법」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
  - 따라서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부과하는 위약금과 동일하게 운영자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 한편, 사례2 (b)의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의 경우 소비자가 사용개시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하고, 4일 전~1일 전 취소하는 경우 10%의 위약금을 부과
  - 「체육시설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용개시 전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10% 위약금을 부과하여, 5일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음
  - 따라서 이 부분은 법령상 기준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소비자권의

제한 소지가 없어 개정이 불필요함

- 과도한 위약금도 「체육시설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하여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위약금이 운영자와 소비자 양쪽 모두에 부과하는 것이라도 10%를 넘어선 과도한 위약금은 소비자의 해제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개정이 필요

### 3.4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 □ 배경 및 현황

-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지 개발 및 홍보 등의 정책 목적을 위해 다양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광역지자체는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을 주로 담당
- 최근 지역 축제에서 식료품 등의 과도한 판매가격 책정·부과(소위 ‘바가지 요금’)\*와 축제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어\*\*, 지자체가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음

\* 방송사 예능프로그램의 지역축제장 옛날과자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촉발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sup>15)</sup>

\*\* 소비자원의 지역축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일부 식품에서 식중독균 검출, LPG 충전 용기 차량 설치 미흡 등 식품과 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sup>16)</sup>

- 이에, 지자체는 부스설명제, 신고포상제, 삼진아웃제(창원시), 착한가격 업소 선정 입점 수수료 면제(강원도), 먹거리장터 가격 사전 협의제(수원시) 등 다양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추진<sup>17)</sup>

15) 파이낸셜리뷰(2023.6.12., [사설]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 이제는 근절해야.

16) 소비자원 보도자료(2024.3.5.), “지역축제, 식품위생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지역축제 안전에 관하여도 이태원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여러 광역지자체는 지역축제 발전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근절과 안전강화 등을 위한 정책추진의 자치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전라남도('24.2.15.)와 경기도('23.10.11.)는 최근 지역축제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축제 평가사항에 '물가관리 실태(공정가격 및 물가관리)'와 '안전관리 체계'를 추가
  - 서울특별시도 축제위원회의 자문사항에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축제 평가사항에 '상품 판매가격의 공정성', '행사장 안전관리'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23.12.29.)
-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의 관련 조례는 축제육성위원회 구성에 '안전 관리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대전의 경우 대표축제로 선정된 축제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안전관리 요원배치 및 사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 분석사례

### 「00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조례」

- 제14조(축제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평가에 따른 시민의 의견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축제 평가 공청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 ⑤ 평가단원의 해촉,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⑥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7) 연합뉴스(2024.3.20.), 돌아온 축제의 계절...지자체들 '바가지 요금과 전쟁' 선포

- 분석대상 조례는 특정 광역시의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당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는 축제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OO광역시 축제육성위원회를 두고,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O광역시 대표축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본 사례의 경우 앞선 시설사용료 반환과는 다르게 법령상 분석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나,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서 소비자권의 제고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음
  - 광역지자체의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법령상 위임 없이 수행되는 것으로 주민의 복리를 위한 자치사무로서 이에 관하여는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가 아닌 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짐
  - 타 지자체의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선 축제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가격 적정화와 축제운영상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어 소비자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축제 평가에 이들 사항을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사례의 조례는 축제 평가사항에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매 식품의 가격 적정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축제소비자의 권리과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필요

## □ 소비자권의 강화를 위한 개정방안

- 지역축제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적정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례의 축제평가 사항에 ‘상품 판매가격의 공정성’, ‘행사장 안전관리 체계’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

## 4. 결론

### □ 지자체의 자치법규 소비자지향성 분석 필요성 제고

- 지방자치제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로 지자체 자치법규는 양적 증가만이 아니라 규율하는 영역의 다양화와 규율 수준의 심화 등 질적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추세에 있음
- 또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지자체가 담당하는 부분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상술한 바와 같이 지자체가 공공서비스의 공급자 등 여러 영역에서 소비자 관련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게 이들 영역을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소비자문제와 관련성을 가짐
- 이에, 지자체 자치법규가 다양한 층위에서 소비자권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영향의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 과제가 있음
  - 자치법규의 소비자지향성 분석은 이러한 정책 여건에서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에 대한 인식은 낮은 상황임
  - 소비자 기본조례 이외의 자치법규에 대한 소비자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소비자지향성 분석으로 진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지자체 자치법규의 소비자지향성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여러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관련 지자체 자치법규가 상당한 규모이고<sup>18)</sup> 자치법규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집행기관과의 협력방안과 함께 지방의회와의

18) 기초지자체의 경우 전체 자치법규의 약 15~20% 정도가 소비자 관련 자치법규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재 기초지자체가 226곳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숫자이다.

협력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치권을 가진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 공정위 예규로 수행되고 있는 소비자지향성 분석을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명시하여 해당 지자체의 소비자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 분석대상 분야의 다양화

-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의 이용관계인 소비자계약 분야 이외의 소비자안전 분야의 소비자지향성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계약 분야의 경우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관련 법령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에서 소비자권의 관련 규정이 있으나, 소비자안전의 경우 타 지자체 등의 규율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분석결과의 수용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소비자계약 분야 중심의 분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안전 분야의 소비자지향성 분석을 강화하고 그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참고 목록 ]

- 김남진·김연태(2021), 「행정법II」, 법문사
- 이광윤(2012), 「일반행정법」, 박영사
- 황의관(2024),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자 권익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방안 연구-사용료 반환 규정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6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 대한민국 정부(2022.7.),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 소비자원 보도자료(2024.3.5.), '지역축제, 식품위생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 필요'
- 파이낸셜리뷰(2023.6.12.), [사설]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 이제는 근절해야
- 연합뉴스(2024.3.20.), 돌아온 축제의 계절...지자체들 '바가지요금과 전쟁' 선포
- Bryan A. Garner editor(2014), 「Black's Law Dictionary」, Thompson Reuters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